

사모사채(기업용)총액인수계약서 (등록발행용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(발행조건)</p> <p>① “채무자”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<기재 생략></p> <p>8. 사채의 이율 : 사채발행일로부터 원리금 상환일 전일까지</p> <p align="center"><u>총 () + () % (표면금리 연 %)</u></p> <p align="center">(□ 고정 / □ 변동 [변동주기 () 개월])</p> <p>② <기재 생략></p> <p>③ <기재 생략></p> <p>1.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사채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, <u>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AAA 등급 1 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</u>,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, 외사화채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, LIBOR 3개월물,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가.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</p> <p>나. <u>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</u>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사회 통합표의 수익률</p> <p>다.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</p> <p>라.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(ICE Benchmark Administration)가 고시하는 금리</p> <p>④ <기재 생략></p> <p><u><내용 신설></u></p> <p><기재 생략></p>	<p>제1조 (발행조건)</p> <p>① “채무자”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<현행과 동일></p> <p>8. 사채의 이율 : 사채발행일로부터 원리금 상환일 전일까지</p> <p align="center"><u>기준금리() + () % (표면금리 연 %)</u></p> <p align="center">(□ 고정 / □ 변동 [변동주기 () 개월])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 <현행과 동일></p> <p>1.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사채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, <u>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(3개월물, 6개월물, 1년물, 3년물, 5년물)</u>,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, 외사화채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, LIBOR 3개월물,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가.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</p> <p>나. <u><삭제></u>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사회 통합표의 수익률</p> <p>다.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</p> <p>라.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(ICE Benchmark Administration)가 고시하는 금리</p> <p>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<u>⑤제1항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,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가감하여 정한 내부이전가격(FTP)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<현행과 동일></p>	<p>- 문구 추가</p> <p>- 3개월 금융채 추가 및 내규 반영</p> <p>- 문구 삭제</p> <p>- FTP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</p>

※ 시행일자: 2017.06.12일

※ 기거래 고객에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미적용